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운용규제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송희경
	담당부서 (과)	자산운용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윤수		연락처	02-2100-2673
	과장	고상범		이메일	gehshine@korea. kr

2021. 6. 2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운용 규제 강화		
	2.규제조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제8의6호~제8의7호, 제242 조제2항제5호, 제271조의10제1항~제12항, 제271조의20제9항제7호· 제8호		
	3.위임법령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제230조제5항, 제249조의7제1항제2항, 제249조의14제6항제4호		
	4.유형	신설/강화	5.입법예고	2021.6.23. ~ 2021.8.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용사가 사모펀드 판매 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된 투자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를 운용할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 ② 운용사가 펀드를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면서 그 차주로부터 대출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대가의 이중수취에 해당 ③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의 경우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을 다수 편입하더라도 개방형 펀드를 설립할 수 있어 유동성 문제 발생 ④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목적회사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차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구체화할 필요 ⑤ 사모펀드를 금전대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개인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대부업자 등과 연계하는 등 악용될 위험 존재 ⑥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펀드별 정기보고에 관한 조항이 상향 입법(영→법)되어, 개정방향에 맞춰 규정의 조항을 영으로 상향 필요 ⑦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완화로, 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 운용인력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② 펀드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자로부터 대출중개 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등도 제한 ③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로서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만 설정·설립 ④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금액 계산시 포함하고,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기준도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규정 ⑤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대상을 전문투자자 등으로 한정하고, 금전대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재간접펀드는 조건부 허용 ⑥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사모펀드의 분기별 보고사항을 영에서 정하도록 규정 ⑦ 업무집행사원 운용인력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및 자산 취득·매각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미자격자의 운용행위 금지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9.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회복 ○ 펀드 주요사항에 대한 감독당국 확인으로 투자자 피해 예방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 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기타	12. 일몰 설정 여부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14. 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현 행	개 정 안
<p>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 . ----- ----- ----- -----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신설></p>	<p>5. <u>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u></p>
	<p><u>집합투자기구(법 제229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u></p>
<p>제271조의10(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7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후단 신설></p>	<p>제271조의10(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 ----- ----- ----- . <u>이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한 것으로서 법</u></p>

현 행	개 정 안
	<p>제249조의7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제3호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각각 “투자목적회사”로,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p>②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신 설></p>	<p>③ 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2.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p>②·③ (생략)</p>	<p>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④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p>	<p>⑥ ----- ----- -----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 -----.</p>
<p>⑤ (생략)</p> <p><신 설></p>	<p>⑦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⑧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p>

현 행	개 정 안
<p>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p> <p>②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 정관을 위반하여 <u>경영참여형</u>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p> <p>2. <u>경영참여형</u>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p> <p>3. <u>경영참여형</u>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p> <p>4. 특정 <u>경영참여형</u>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p> <p>5. (생략)</p> <p><u><신 설></u></p>	<p>자기구를 <u>설정·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p> <p>⑨ -----</p> <p>-----</p> <p>-----</p> <p>-----</p> <p>1. ----- <u>기관전용</u> -----</p> <p>-----</p> <p>-----</p> <p>2. <u>기관전용</u> -----</p> <p>-----</p> <p>-----</p> <p>-----</p> <p>3. <u>기관전용</u> -----</p> <p>-----</p> <p>-----</p> <p>-----</p> <p>4. ----- <u>기관전용</u> -----</p> <p>-----</p> <p>-----</p> <p>-----</p> <p>5. (현행과 같음)</p> <p>6.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u></p> <p><u>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업무 <u>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u> <u>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 회사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u> <u>라.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u> 7.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가. 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u> <u>나.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운용과 실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u></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04 219 363 257"><u><신 설></u></p> <p data-bbox="204 539 786 712">③ 법 제249조의1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p>	<p data-bbox="845 219 1433 526">8. 영 제271조의21제3항에 따른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u></p> <p data-bbox="845 539 1252 577">⑩ (현행 제3항과 같음)</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권유 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
 - 다만, 판매 후 운용사가 핵심상품설명서와 다르게 펀드를 운용하더라도 일반투자자는 이를 인지할 수 없어 투자자 피해 우려
- ② 운용사가 사모펀드의 자산으로 대출을 하면서 운용보수와 별도로 차주로부터 대출에 대한 중개·주선·대리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 대가의 이중 수취에 해당할 뿐 아니라 관련 수수료 수취를 위해 손실 위험이 높은 대출계약을 선호하는 등 투자자 피해 가능
- ③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등 자산의 현금화가 곤란한 경우* 펀드유형 제한
 - 사모펀드도 시장성 없는 자산을 다수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만기 미스매치 구조는 펀드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
 - 이 경우, 투자자의 수시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는 즉시 매각이 어려운 투자대상자산으로 인하여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
 - 현재 감독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유동성 위험을 관리 중

*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금융위, '20.8월)』

※ <관련 사례>

사모사채,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은 투자자 甲의 중도환매 요청으로 인하여 사모사채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자산의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하여 환매불가 사태 발생

④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펀드 순재산의 400%까지 차입을 허용함에 따라, 레버리지 산정방식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

* [현행] 전문투자형(일반) 사모펀드 : 펀드 순재산의 400% 이내
경영참여형(기관전용) 사모펀드 : 10% 이내(SPC 300% 이내)

-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산정 시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함에도 그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한도(400%)에 과소 반영되는 사례 발생
- 또한, 모든 사모펀드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투자 목적회사의 레버리지 비율도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제한 필요

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대출 방식의 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적용하던 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

* [현행] 전문투자형(일반) 사모펀드 : 허용. 단, 개인에 대한 대출 제한
경영참여형(기관전용) 사모펀드 : 대출 방식의 영업 불가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업무 가이드라인(금융위, '16.7.26.~)

- 특히, 사모펀드의 재산을 개인 등에게 직접 또는 대부업자 등과 연계하여 대여하는 경우 그림자금융 등 부작용 발생 우려

⑥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적격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여한 펀드별 정기보고 의무에 관한 조항이 상향 입법(영 → 법)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법 개정방향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의 내용을 영으로 상향 필요

⑦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규제 완화로 다양한 투자전략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운용인력 요건을 신설

-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할 필요

□ 개선방안

- ① 운용사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지 않게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
- ② 운용사가 사모펀드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차주로부터 대출 관련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
- ③ 금융위 고시로 정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50% 초과 투자한 일반 투자자 대상 펀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 *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금융위 행정지도, '20.8월)』에서 정한 시장성 없는 자산과 유사하게 금융위 고시로 규정
- ④ 사모펀드가 보유한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도금액 및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금액을 레버리지 한도 계산시 포함
 -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기 자본 대비 차입금액의 비율도 동일하게 400% 이내로 제한
- ⑤ 개인 및 유흥업·사행업종 영위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대부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금지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 현행 금전대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
 - ** 1. 금전대여 목적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나, 차주의 목적이 부동산·특별자산 관련인 경우 판매를 허용
 - 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출형 사모펀드에 90%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펀드 설정·설립 불가
 - 3. 대출형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구체화
- ⑥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6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사모펀드의 분기별 보고사항*을 영으로 상향 규정

* 영으로 상향 규정되는 ‘금투자업규정 §7-41의6 ③ 정기 보고사항’

- ①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② 투자대상자산 현황
- ③ 집합투자기구의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 ④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현황
- ⑤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 ⑥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현황
- ⑦ ①~⑥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 관리방안

- 또한,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도 현황 및 증권의 차입 후 매도현황을 보고사항으로 추가

⑦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인력은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운용과 자산의 매각·취득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미자격자의 운용을 제한

* 금융투자업규정 제4-64조(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

** 경영참여 목적의 운용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겸직을 금지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대안명	사모펀드 운용규제 신설·강화 없음
현행유지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용사가 판매시 제공한 투자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를 운용하더라도 제한 없음 ② 운용사가 펀드 자산으로 금전을 대여하며 운용 보수를 받고, 별도로 수수료도 수취 가능 ③ 공모펀드에 대하여만 시장성 없는 자산 20% 초과 투자시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하도록 함 ④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 매도금액 등을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한도 계산시 제외 ⑤ 사모펀드가 개인에 대한 직접 금전대여 또는 대부업자 연계를 통한 대출 가능 ⑥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 미보고 ⑦ 운용인력 자격이 없는 자의 사모펀드 운용 가능

규제대안1	대안명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용사가 판매시 제공한 투자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를 운용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제재 ② 운용사가 펀드 자산으로 금전을 대여하며 관련 수수료를 수취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제재 ③ 공·사모 펀드가 (현행보다 완화된 수준의) 시장성 없는 자산에 50% 초과 투자시 개방형 펀드 금지 ④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 매도금액 등을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한도 계산시 포함 ⑤ 사모펀드가 개인에 대한 직접 금전대여 또는 대부업자 연계를 통한 대출 불가 ⑥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독당국에 보고 ⑦ 운용인력 자격이 없는 자의 사모펀드 운용 불가
규제대안2	대안명	대안1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강화 하되, 행정지도 방식을 활용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이행
	내용	- 대안1과 유사하나, 위반 시 제재 근거 없음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의 자율성 극대화 • 별도의 규제사항 미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부적격자의 운용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 발생 • 사모펀드 차입에 대한 관리가 없어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
규제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의 운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 •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및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회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 규제 신설에 따른 운용사 및 업무집행사원의 부담 일부 증가
규제대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를 통해 운용사 자율에 따른 위험 관리 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성 부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21.6.10.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주재 시장간담회 등)	제도개선안에 반영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법안 마련 과정에서 금감원·금투협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상시 협의하였음	제도개선안에 반영
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21.6.23. ~ 8.2.)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함

○ 현행안을 유지할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합리한 운용행위 및 금전대출행위 등에 대한 규율 부재, 차입현황 등에 대한 관리 부족 및 시장성 없는 자산으로 인한 펀드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 보호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개선 필요

○ 규제대안2의 경우, 행정지도 등은 규범력과 제재 가능성이 한계가 있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

- 이제까지 법령 및 감독당국의 사전규제를 최소화하여 시장 참여자 스스로가 규율해 나가는 자율·창의적 시장을 지향해 왔으나, 최근 운용사·판매사·수탁회사·투자자 등의 자율적인 시장규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 따라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도 시장참여자들의 규율 이행을 담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됨

3. 규제목표

□ 사모펀드 운용행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감독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완화에 따라 일반 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맞추는 한편,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운용규제를 강화(핵심상품설명서 위반 금지 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 운용사의 불합리한 운용행위 및 시장성 없는 자산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자자 피해 예방
 - 운용사는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자율적 운용 및 다양한 투자전략 활용으로 고수익 창출 가능 및 이는 국민재산 증식으로 귀결
- 규제내용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라는 자본시장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자산운용시장의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시장 활성화는 자금조달주체인 피규제자의 이익에 해당

○ 또한, 본 규제는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인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위반시 제재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 이행 기대

- *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업무 가이드라인('16.7월~)
- 2.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20.8월~)

2. 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규제이거나, 이미 시행 중인 규제를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 규제 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정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감원·업계 등과 협의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

3. 종합결론

-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완화에 따라 ①**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간 규제수준의 형평성을 고려**(레버리지 한도, 금전대여 제한, 운용인력 규제 등) 하고, ②**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비시장성자산 펀드의 설립유형 제한, 정기보고 사항 추가 등) 및 ③**건전한 시장질서 확립**(핵심상품설명서 위반금지, 대출 관련수수료 징수금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서,
- **피규제자인 운용사는 일원화·완화된 운용규제를 통해 자율적인 운용과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에 따른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피규제자의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